

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

(광진구 광장동) (시행일 : 2018. 9. 3.)

(제정) 2016. 5.11.

(개정) 2018. 9. 3.

제1조(명칭) 본 협의체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(이하 “본 협의체”라 한다)라 칭한다. <2018.9.3.개정>

제2조(목적) 이 세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민·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 동 단위에 마련한 본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8.9.3.개정>

제3조(구성 및 기능)

1. 본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 <2018.9.3.개정>
2. 본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<2018.9.3.개정>
 - 1) 동 지역 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 - 2)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해 자발적·실천적 의지가 있거나 지역 내 인적·물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, 단체 또는 개인
 - 3) 지역 내 취약계층과의 접근성이 높아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용이한 영업주 및 관련 직업을 가진 자
3.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계·협력 업무를 행한다. <2018.9.3.개정>
 - 1)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
 - 2)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
 - 3) 지역보호체계 구축·운영
 - 4)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임원) 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위원장 : 2명(동장, 위촉직 민간위원장) <2018.9.3.신설>
2. 부위원장 : 1명(민간위원) <2018.9.3.신설>

제5조(임원의 선출)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다음 방법에 의거하여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 시 보강한다.

1. 위원장은 위촉직 민간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된 1명과 동장이 공동으로 담당하며, 본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구 지역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한다. <2018.9.3.개정>

2.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,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2018.9.3.신설>

제6조(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)

1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<2018.9.3.신설>
2.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<2018.9.3.신설>
3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<2018.9.3.개정>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<2018.9.3.신설>
3. 본 협의체 운영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<2018.9.3.신설>
4.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<2018.9.3.개정>

제8조(회의 등)

1.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 <2018.9.3.개정>
2. 지역복지 사업 추진 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2018.9.3.개정>
3. 협의체의 회의록을 기록·작성하는 등 본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서기(담당자)를 둔다. <2018.9.3.개정>

제9조(회의록 작성) 본 협의체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회의 참석자 명단
3. 회의안건 및 주요결정 내용 <2018.9.3.개정>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0조(비밀준수의 의무) 본 협의체 위원은 업무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정보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 <2018.9.3.신설>

제11조(의견의 청취) 본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,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<2018.9.3.신설>

부칙 제1조(시행일) 본 운영세칙은 가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